

고 시

서울특별시종로구고시 제2006-40호

중학2구역 2-1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(경미한 변경)지정

1.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-292호(2006.08.24)로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 된 종로구 중학동 14번지 일대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와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42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도시환경정비구역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결정하고 이를 고시 합니다.
2. 관계 도서는 서울특별시 종로구청 도시계획과(☎ 731-1421~4) 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.

2006년 9월 8일

종 로 구 청 장

- 가. 정비사업의 명칭 : 중학2구역 2-1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
나.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

구분	구역명	지구명	위 치	시행면적(㎡)			비고
				계	대지면적	정비기반시설	
기정	중학2	2-1	중학동14번지 일대	5,420.0	4,404.3	1,015.7	변경사항 없음
변경	중학2	2-1	중학동14번지 일대	5,420.0	4,404.3	1,015.7	

다. 건축계획

구분	지구	대지면적 (㎡)	건폐율 (%)	용적률 (%)	연면적 (㎡)	높이 (m)	층 수 (지상/지하)	주된 용도
기정	2-1	4,404.3	50이하	778이하	55,300이하	70이하	17층 이하/7	업무
변경	2-1	4,404.3	50이하	778이하	55,500이하	65이하	17층 이하/7	업무

라. 변경결정 사유 : 문화재청 국가지정문화재현상변경허가 사항을 반영한 건축계획의 변경신청 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 사항임.